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2025년도

건양노인복지센터

1.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지원

나. 일상생활지원

다. 정서지원

라. 인지활동지원

마. 여가활동지원

바.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사. 지역자원 연계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	감경		기초생활 수급권자
			15%	9%	
1등급	2,306,400	345,960	207,576	138,384	면제
2등급	2,083,400	312,510	187,506	125,004	
3등급	1,485,700	222,855	133,713	89,142	
4등급	1,370,600	205,590	123,354	82,236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66	39,444	

-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한도 금액으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 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3)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40% 감경 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9%를, 60% 감경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6%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4)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 5)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나. 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03시간 이상 - 0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06시간 이상 - 0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0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다. 비급여 항목

식사비용은 1회 3,000원, 간식비용은 1회 1,000원이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 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나.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라.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 마.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바.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 사. 그 밖에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 가.利用者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 한다.
- 나.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